

【별 지】 급여산정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 확인(「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」 제6조의2)

- ① 급여산정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를 확인하시고,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하여 주십시오.
- ② 해당 요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기재하실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급여산정 특례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	확인
1호	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. 범인 또는 피의자의 체포	
	나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, 주요 인사(人士) 경호 및 대간첩·대테러 작전 수행	
	다.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(危害)의 방지 라.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출동, 범죄예방인명구조재산보호 등을 위한 순찰 활동, 해양오염 확산 방지	
2호	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.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화재진압, 인명구조·구급작업 또는 이를 위한 지원활동(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·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)	
	나. 위험 제거를 위한 생활안전활동	
3호	대통령경호처 직원이 「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경호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	
4호	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 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 가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제1항제3호·제4호에 따른 직무	
	나.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 다.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정보 수집	
5호	교도관이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계호(戒護)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	
6호	산림항공기 조종사 및 그와 동승(同乘)한 근무자가 현장에서 산불예방·진화작업, 산림병해충 예찰·방제 작업, 인명구조, 재난재해 현장에서의 구난행위(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·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)를 하다가 입은 재해	
7호	「수산업법」 제69조에 따른 어업감독 공무원이 어업지도선 및 단속정에 승선하여 불법어업 지도·단속(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·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)을 하다가 입은 재해	
8호	「형사소송법」 제197조 및 제245조의9에 따른 사법경찰관이나 「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」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가 범죄의 수사·단속 또는 범인이나 피의자를 체포하다가 입은 재해	
9호	공무원이 다음 각 목의 활동 중 입은 재해 가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에 따라 재난재해 현장에 투입되어 수행한 인명구조·진화·수해방지 또는 구난(그 업무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·복귀 및 부수활동을 포함한다)	
	나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 방지	
	다. 「산림보호법」에 따른 산불 진화	
	라. 국외에서 천재지변·전쟁·교전·폭동·납치·테러·감염병, 그 밖의 위난상황 발생 시 대한민국 국민의 보호 또는 사고 수습 마. 「화학물질 관리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	
10호	공무원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직무, 업무 또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복성 범죄·테러 등 또는 실기·실습 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되어 입은 재해	
11호	그 밖에 「공무원 재해보상법」 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가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재해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재해(1~1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)	

※ 「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」 제6조의2 제3호에 따른 ‘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공무원’ 이 체크리스트 1호~9호까지의 직무, 업무 또는 활동을 수행하다 질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재해유형(1호~9호)에 표시하여 주십시오.

참고

경위조사서(질병) 제출 자료 및 확인사항

- 공무상재해 인정특례(공무상 질병 추정제) 질병 신청 시, 「4.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출 자료」에서 지정한 서식만 제출 / 이외의 경우 1~3에 해당하는 자료 제출

1. 공통 제출 자료

구 분	제출 자료
법정 자료	1.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(신청인 서명,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*) *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금취급기관에 직인 날인 요청 2. 상병 경위조사서(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,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) 3. 진단서
의학적 사실 관련 자료	4. 최초 내원 병·의원 의무기록지 사본(내원 경위, 증상 등 기재) 5. 상병명 진단을 위한 영상촬영 CD - 해당지만 제출 (상세 내용은 [붙임] 참조) - 영상판독지 및 검사결과지 제출 가능한 경우 함께 제출
기타 관련 자료	6. 건강진단결과 통보서 및 건강검진 문진표 사본(발병전 2회분) - 근골격계 질환, 정신과적 질환은 제외 7. 질병관련 업무수행경력 확인자료(경력증명서, 인사기록카드 등) 8. 업무분장표 사본(발병 당시 및 발병 6개월 전의 것) 9. 기타 발병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2. 질환별 제출 자료

- 해당 명칭 자료가 없는 경우 유사자료로 제출,
- 아래 제출자료는 발병과 공무 관련성 판단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므로,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 가능
ex) 감염병 등 감염시, 해당 지역의 감염병 유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구 분	제출 자료	
과로 관련 질환	1. 초과근무내역서(상병월 포함 7개월간, 월별로 초과근무시간 정리) 2. (초과근무수당 지급비대상자의 경우) PC온오프 기록 또는 출퇴근시간 전산 체크기록(상병월 포함 7개월간, 월별로 초과근무시간 정리) 3. 과로의 정성적 인정기준 ※ 인사혁신처 「공무상 질병 판정기준」(예규) III. 1.에 적시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⑦교대근무자 근무시간내역을 서식에 맞춰 상세히 기재	
작업 환경 관련 질환	근골격계 1. 근골격계 신체부담 작업 평가용 체크리스트 - 관련직무기간, 작업량, 작업주기, 작업시간, 작업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* 인사혁신처 「공무상 질병 판정기준」(예규) 별표 근골격계 질환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크리스트 생략 가능	
	암 및 희귀질환	1. 발병 유해인자 노출 입증자료(화재출동내역, 유해물질 성분표 등*) * 인사혁신처 「공무상 질병 판정기준」(예규)에 적시된 직업성 암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'화재출동내역, 유해물질 성분표 등'은 생략 가능(단, 요건 충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추가 자료요구 예정) 2. 임용 후 발병시까지 유해인자 노출경력 정리
	청력 질환	1. 특수건강검진 결과표 (확보가능한 모든 연도의 것) 2. 소음 측정자료(출동차량 소음규격서, 작업기기 소음측정자료 등) 3. 임용 후 발병시까지 소음노출 경력 정리
정신건강 의학과적 질환	1. 심리적·정신적 충격을 주는 사건 발생 입증자료 - 학교폭력위원회 결과보고, 민원처리내역, 가해자 징계자료, 사건사고사실 확인원, 구급대원 소견이 명시된 구급활동일지 등 - 공식자료 미존재 시, 비공식자료 제출(업무/교무수첩, 메신저 기록 등) 2. 정신건강의학과 질환 관련 기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-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(발병 전 10년간, 비밀보호 표시[*****] 해제 요청) 3. 정신질환 체크리스트(기관 작성용)	
기타 질환	1. 업무수행과 발병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	

3. 상병명 진단을 위한 필수 영상물 및 검사결과지

- 공무상 요양 신청시 해당 영상촬영(검사) 사실이 없는 경우, 실제 촬영영상(검사결과)만 제출하면 됨
ex) 6항의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 진단 시 : MRI 없이 초음파만 검사한 경우 초음파 검사만 제출
- 다만,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, 해당 영상촬영(검사)를 미 실시하였을 경우에는 공무원재해보상 심의회에서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 요청할 수 있음

구분	순번	상 병 명	필수 영상물 및 검사
뇌	1	뇌출혈, 두개골 골절	Brain CT
	2	뇌경색, 뇌종양, 미만성뇌축삭손상(CT로는 확인불가)	Brain MRI
척추	3	척추질환(추간판장애 등) - CT는 정확성 떨어짐	척추 MRI
관절 · 인대	4	1. 어깨 회전근개 손상(파열) 2. 어깨 근육 파열(손상), 어깨 탈구 등 * 초음파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, 추정진단만 가능	1. 어깨 MRI 2. 관절경(수술 시)
	5	무릎 인대, 무릎 연골 파열(손상) - 전·후십자인대, 내·외측반달연골, 내·외측측부인대 등	1. 무릎 MRI 2. 관절경(수술 시)
	6	1. 발목 아킬레스건 파열(손상) * MRI 없을 경우 : 수술기록지, 수술 사진 2. 발목 인대 파열	발목 MRI, 초음파
	7	1. 다리, 팔 등 근육 파열(손상) 2. 인대장애, 팔꿈치 상과염	해당부위 MRI, 초음파
	8	망치 손가락(수지)	X-ray, (검사 시)초음파
	골절	9	늑골 골절
10		안와 골절, 비골 골절(코뼈)	안면부 CT, X-ray
11		기타 골절	X-ray, CT, MRI
안면부	12	안과 질환	관련 검사 영상물
	13	난청 관련(4가지 검사) * 정확한 판단·심의를 위해 신청시 4가지 검사 제출 필요, 미제출 시 심의회에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	1. 순음청력검사 2. 언어청력검사 3. 임피던스 청력검사 4.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
	14	성대결절	해당부위 사진
	15	치과 관련 질환	치근단사진, 파노라마X-ray 안면부 CT(턱)
피부 등	16	화상 및 반흔, 색소침착	해당부위 사진
흉복부	17	결핵	X-ray, CT
	18	복부 장파열, 폐질환, 결핵	복부 CT, 폐 CT
신경계통	19	마비, 신경손상 등	근전도 검사
기 타	20	염좌, 긴장, 타박상,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	제출 영상 없음
	21	진단서가 아닌 소견서(응급진료만 한경우) 제출시 * 외래진료 접수하면 진단서 발급 가능	진단서

4. 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제출 자료

-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의2(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) : 유해하거나 위험한 환경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공무수행과정에서 상당기간 유해 ·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질병에 걸리는 경우와 그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추정함 /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(인사혁신처예규 제154호) 참고
- 다만,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추가 자료가 필요시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할 수 있음

분 야	구 분	구비서류	비고
	공통구비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(신청인 서명,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,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단에서 연금취급기관에 직인 날인 요청) • 상병 경위조사서 (조사자 및 확인자 서명, 연금취급기관장 직인 날인) • 진단서 	법정 자료
뇌혈관 · 심장 질병	지주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급성 심근경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병명 진단 위한 영상물 및 검사결과지 • 발병 전 12주간 교대근무자료 (e-사람 복무내역, 교대근무일지 등) • 발병 전 12주간 실근무시간 자료 (1주 평균 실근무시간 52시간을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) 	
근골 격계 질병	(어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병명 진단 위한 영상물 및 검사결과지 • 질병 관련 직무 경력 확인자료(인사기록카드 등) • 질병 관련 업무 내용 확인자료(업무분장표 등) - 추정조건 해당 연도 업무분장표 일체 	
	회전근개 힘줄 완전파열		
	(팔꿈치)		
	내(외)상과염		
	(손목)		
	건초염 (힘줄윤활막염, 드퀘르빙)		
	삼각섬유연골복합체 파열		
	터널증후군		
	(무릎)		
반달연골 파열			
직업성 압	중피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질병 관련 직무 경력 확인자료(인사기록카드 등) • 질병 관련 업무 내용 확인자료(업무분장표 등) - 추정조건 해당 연도 업무분장표 일체 	
	방광암		
	폐암		
	비호지킨림프종		
	다발성골수종 백혈병		
정신 질환	(외상사건을 경험한 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외상사건 경험 관련 입증자료 - 범인체포, 범죄수사, 화재진압, 인명구조, 구급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외상 사건 관련자료 등 • 종합심리검사지 • 정신과 질환 관련 기왕력(과거병력)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-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서(상병일 기준 과거 10년간) 	
	급성스트레스장애 외상후스트레스장애		